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31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I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

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·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원)

구 분	상시간병급여	수시간병급여
전문간병인	53,060	35,370
가족·기타 간병인	46,250	30,830

* 전문간병인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